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2026.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②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③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④ 협조자 약점 파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⑤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⑥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

· 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통계조작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 수사였음을 방증하는 것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도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정부 문서 등 증거에 대한 자의적 해석, 왜곡된 법리 적용 등 조작기소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최근 재판부에서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5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고발했던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하하여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음.

아울러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음. 특히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강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이 잇따랐음.

이에 위에서 열거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다.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라.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마.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
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전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양천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도청, 성남시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통령기록관,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타 기관 : (주)호반건설, (주)쌍방울, (주)퓨처코어(구, 나노스(주)), (주)광림, 케이에이치필룩스(주), 케이에이치건설(주),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주)장원테크,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 포함), 삼일회계법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주)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리포엑트, 리어예술단,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2026. 3. 20.(금) ~ 2026. 5. 8.(금) (50일)

가. 기관보고: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현장조사: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청문회: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 수 : 20인

나. 위원 배분 : 11인(더불어민주당) : 7인(국민의힘) : 2인(비교섭단체)

다. 구성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	더불어민주당 (11인)	서영교 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박지원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전용기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인)	곽규택 나경원 김재섭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조배숙	
	비교섭단체 (2인)	차규근 손솔	

※국민의힘 간사위원은 곽규택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임.

라. 직원 : 22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법 제사법위원회 (22인)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심 정 희	
	전문위원(이사관)	최 기 도	
	입법조사관(부이사관)	김 남 영	
	행정실장(서기관)	김 병 관	
	입법조사관(서기관)	김 형 섭	
	입법조사관(서기관)	임 윤 섭	
	입법조사관(서기관)	노 경 훈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안 은 주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최 한 슬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노 장 원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최 용 국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수 나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현 성	
	입법조사관(행정주사)	이 강 욱	
	행정관(행정주사)	김 기 연	
	행정관(행정주사보)	문 중 민	
	주무관(행정주사)	김 민 욱	
	주무관(행정주사)	박 욱 서	
	주무관(행정주사)	김 수 자	
	주무관(행정주사)	김 남 경	
	주무관(사무주사)	이 지 영	
	주무관(사무주사보)	김 영 희	

7. 소요경비

-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집행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